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회

일시 : 2009. 12. 17.(목) 오전 11:00 - 12:00

장소 :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회

일시 : 2009. 12. 17.(목) 오전 11:00 - 12:00

장소 :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

< 발표회 진행순서 >

사회: 오동석 위원

- 11:00-11:05 교육감의 인사 말씀
- 11:05-11:15 경과 보고와 향후 계획(김인교 부위원장)
- 11:15-11:35 조례 초안의 개요와 골자 발표(곽노현 위원장)
- 11:35-11:45 초안 작성의 배경과 근거(이재삼 위원)
- 11:45-12:00 질의 및 응답

< 자료집 순서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성안을 환영하며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의 개요	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	19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초안의 작성 배경과 근거	32
<참고자료 1> 자문위원회 홈페이지에 제시된 조례안 의견 모음	41
<참고자료 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학생참여기획단 의견 모음	47
<참고자료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 해설	55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성안을 환영하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드디어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을 성안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 광노현 위원장 이하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자문위원회는 학생의 인권 보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조례안 초안을 성안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요일에도 시간을 내어 조례안 자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하였습니다. 사실 자문위원회 협의회만으로도 빠듯한 일정이어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학생의 인권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교육 관련 주체들로부터 광범위하고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인권조례를 만드는 일은 그만큼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번 조례 초안은 그 첫 결실이겠지요. 이제 자문위원회는 이 초안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곧바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시작하고, 1월에는 다시 또 각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이 인권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존중받음으로써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의 하나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것이고 그 끝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초안을 성안하는 과정 자체가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이었듯이 향후 조례 제정을 위해 이어지는 길도 그 자체가 인권을 매개로 소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자문위원회의 초안은 전적으로 자문위원회의 헌신적인 노고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제 자문위원회는 남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초순에 조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숙고는 하되 가능한 한 짧은 시일 내에 경기도교육감 발의의 조례안을 확정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조례 성안 절차가 독단적이지 않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인권조례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리자 등 교육 관련 주체가 모두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주요 학생인권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을 이미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학생의 인권 문제를 마냥 미룰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을 먼저 하고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수순을 밟고자 합니다.

물론 그 길도 우리 모두가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성찰과 지혜의 손길을 함께 모으지 않으면 출발조차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저는 언제라도 주저 없이 손을 내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스한 질책과 냉철한 사랑이 고루 담긴 손길로 아낌없이 그 손을 잡아주십시오. 아무쪼록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한걸음을 더 내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17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교육공동체가 소통과 나눔 속에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추진 경과

1. 2009. 05.28(목)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수립
2. 2009.07.30(목)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교육감) 및 제1차 협의회 실시
 - 주요내용
 -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위원장: 곽노현 교수, 부위원장: 김인교 교장) 9명
 - 광주인권조례안과 일본 가와사키현 조례의 선행학습 계획 수립
3. 2009.08.04(화) : 자문위원회 제2차 협의회 실시
 - 주요내용
 - 인권 조례 관련 연수
 - 자문위원회의 위상 정립: 인권조례안을 성안하는 주도적 역할 수행
 - 자문위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4명 추가로 위촉키로 함
4. 2009.08.20(목) : 자문위원회 제3차 협의회 실시
 - 주요내용
 - 자문위원 4명 추가 위촉(오동석 아주대 교수 외 3명)
 - 조례 제정 실무를 담당할 기획소위원회 구성(김영기, 박진, 오동석, 서미향)
5. 2009.08.27(목) : 자문위원회 제4차 협의회 실시
 - 주요내용
 - 조례안기초소위원회 구성(조례 제정 소위원회 4명에 부위원장 포함 5

인으로 구성)

- 위탁연구과제 공모 제안서를 검토하고 2개월 연구과제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 자문위원회 연찬회 실시 계획 협의

6. 2009. 08.26(수) : **2009 위탁 정책연구과제 연구계획 공모**

- 공모과제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7. 2009.09.10(목)~09.11(금) : **자문위원회 연찬회 및 제5차 협의회 실시**

-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위촉
- 인권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
 - 학생 인권의 국제적 흐름-류은숙(인권활동가)
 - 학생 인권의 현실-공현(청소년인권네트워크)
 - 일본지자체의 아동조례 제정 현황-김형욱(전 와세다대 연구원)
 - 경남인권조례 제정 현황-고영남(인제대 교수)
 - 학생 인권과 교원에 대한 쟁점 토론-배경내(인권활동가,자문위원)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대회 계획 논의
- 사전협의회 계획 논의
-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 <http://human.kerinet.re.kr>

8. 2009.09.25(금) :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교육감) 및 제6차 협의회 실시**

- 장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 및 활동실
- 참석자 : 경기도교육관계자 관리자, 교사, 전문직, 학생, 교원단체 등 300여명
- 추진대회 개요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 인권영화 상영

- 경기교육가족의 영상 의견
- 조례 제정 관련 현장 의견 수렴
- 조례 제정 관련 설문지 작성

9. 2009.09.28(월) : 위탁연구용역 계약 체결(성공회대학교 평화인권센터)

10. 2009.10.6(화)~10.20(화) : 찾아가는 생활지도 및 봉사활동 연수 시
 중·고등학교 교감 및 학교운영위원장 대상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
 의에 관한 연수 실시

11. 2009.10.16(금) : 자문위원회 제7차 협의회 실시

- 주요 내용
 - 정책연구팀 진행 사항 점검
 - 조례 제정 추진대회 설문결과 분석
 -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협의
 - 학생인권조례 작품 공모전 관련 계획 협의
 - 학생참여기획단을 500명으로 확대하여 모집·운영

12. 2009.10.23(금) : 인권조례 관련 10문 10답 완성하여 연수 책자에 수록

13. 2009.10.28(수)~11.3(화) : 학생인권조례제정 사전협의회 개최

- 경기도 지역을 9개 권역(용인, 의정부, 고양, 수원, 안산, 안양과천, 성남, 구리남양주, 부천)으로 나누어 자문위원 4명을 한 팀으로 구성, 현장 방
 문
- 권역별 학생, 학부모, 교사, 관리자 등 약 1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인권조
 례 제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팀별로 자문위원들과의 질의·응답 시
 간을 가지며, 설문조사를 실시함
- 6개 권역은 실시하였으나, 신종플루로 인하여 성남, 구리남양주, 부천 지
 역은 실시하지 못함

14. 2009.10.26(월)~11.05(목)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관련 학생 작품
공모전 실시
- 영상물, 글짓기, 미술작품 등 3개 영역별로 초·중·고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각 영역별 우수 작품 교육감상 시상
 - 수상작 발표는 12월 10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생인권조례제정 홈페이지에 탑재
15. 2009.11.13(금)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제8차 협의회 개최
- 학생인권조례 관련 작품 공모전 진행 상황
 - 11월 13일 작품 공모 마감
 - 11월 17일 심사위원을 따로 위촉하여 심사
 - 학생참여기획단 모집 관련 협의 - 현재 342명이 참가 신청함
 - 인터넷상 카페를 만들어 학생들이 운영하되 자문위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운영
16. 2009.11.20(금)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중간발표회 및 일본 가와사키 인권조례 제정팀과의 협의회 개최
- 교육감님의 인권조례에 대한 중간 경과 발표
 - 학생작품공모전 입상자 발표
 - 일본가와사키 조례 제정 팀 8명 내방하여 협의
17. 2009.11.26(목) : 시민단체 및 특수집단과의 사전협의회 실시
- 장소 : 수원하이텍고등학교
 - 전문상담교사, 대안학교 교원, 특수학교 및 학부모,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가와 4그룹으로 나누어서 사전협의회 실시
18. 2009. 12.6(일) : 자문위원회 제9차 협의회 실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
 - 주요안건 :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축조심의)

19. 2009.12.13(일) : 자문위원회 제10차 협의회 실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
- 주요내용
 -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축조심의)
 - 기자회견 개최 및 홍보계획 협의
 - 향후 일정 협의

◎ 향후 일정

1. 경기도교육위원 및 도의회의원과의 별도 간담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초안 보고 계획
2. 2010년 공청회 일정(예정)
 - 가. 1. 13.(수) 경기도교육공동체 각 주체 대표의 의견 수렴
 - 나. 1. 19.(화) 14:00-16:00 주체별(교사, 학부모) 의견 수렴 동시 진행
 - 다. 1. 25.(월) 14:00-16:00 학생 의견 수렴
3. 2010년 1월 25일(월) 16:00-18:00 자문위 11차 협의회
4. 2010년 2월 1일(월) 교육감에게 자문위원회 학생인권조례 최종안 제출
5. 2010년 2월 초순 교육감, 경기도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안 정식 제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의 개요

I. 제안이유

1. 헌법과 교육 관련 법령 및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함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제1항),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제2항), ‘무상의 의무교육’(제3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의 법률규정주의’(제6항) 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제12조 제1항),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것을 전제로 하여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그리고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제13조 제1항),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의 인권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의 전반적인 해석지침이자 모든 권리 영역에서의 적용에 관한 4개의 일반원칙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차별의 원칙(제2조)이다.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이는 “아동 자신의,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둘째,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제3조)이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

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학교 등에 모두 적용된다.

셋째,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원칙(제6조)이다.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라는 의미에서 “발달”은 질적인 면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 원칙(제12조)이다.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아동의 의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정당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교육 관련 법령 및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함이다.

2.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경기도 학생인권의 현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몇 가지만 들여다보더라도 그 침해양상이 자못 심각함을 알 수 있다.

(1) 초등학생의 인권현실 인식

첫째, 체벌의 경우 교사가 얼굴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손으로 때린다는 응답 19.3%, 단체로 벌을 받는다는 응답 45.9%, 교사가 수업시간에 벌을 주어서 수업을 못 듣게 한다는 응답 24.8% 등 체벌이나 부적절한 처벌 방식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프라이버시의 경우, 가방, 소지품 검사를 당한다는 응답이 10.1%이고, 일기장 검사를 받는다는 응답이 60.6%이다.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핸드폰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응답은 80% 이상이다. 인권위원회가 일기장 검사나 휴대전화 규제 등에 대한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언어폭력 433명(12.5%) △집단 괴롭힘 330명(9.5%) △잡은 학교시

협 280명(8.1) △별세우기 264명(7.6%) △신체적 폭력(체벌) 255명(7.3%) △일기장 검사 243명(7.0%) 순으로 대답하였다.

넷째, 인권교육의 경우 70%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거나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중고등학생의 인권현실 인식

첫째, 두발복장규제의 경우,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인 99.4%에 존재하였다. 두발복장규제 위반에 대한 조치로는 재검사, 훈계, 악세서리 등 압수, 체벌, 벌점 등이 있다고 대답했고, 강제이발이나 강제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등의 처벌도 30% 안팎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둘째,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오후·저녁 보충수업, 방학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의 경우, 중·고등학생들 중 40% 안팎 또는 과반수 이상이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7시30분~59분 사이가 41.7%로 가장 많았다.

셋째, 체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수시로 경험한다는 답이 35.2%, 1주 2회 이상 경험이 26.4%로 중고등학생들의 체벌 현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는 답은 6.2%에 그쳤다. 체벌의 이유로는 과제나 수업태도, 두발복장 규정 등 위반, 지각이나 결석이 가장 많았다.

넷째, 참여와 의견 표현의 경우,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답은 19.0%뿐이었으며,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답이 40.1%였다. 학생회 운영에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이 높은 등 학생자치 활동이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

다섯째, 학교에서 차별 사유에는 성적에 의한 차별이 57.3%로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싫어서가 41.2%. 나이나 학년에 의한 차별, 외모, 신체적 특징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학생이 30%대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육환경의 경우 보건실 사용, 겨울철 화장실 사용, 교실 냉난방 시설, 탈의실 등에 대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 56%의 학생들이 급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53.2%의 학생들은 고민이 있을 경우 편하게 상담을 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학교내 화장실, 도서실, 식당, 매점 등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 55.3%의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였다.

일곱째,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운영, 교육환경 등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편이다 30.5%, 인권을 매우 많이 침해하고 있는 편이다 20.3%로 50.8%가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덟째,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두발규제 → △복장규제 →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 → △단체기합 및 체벌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입시경쟁 해소 →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및 선택권 부여 순으로 나타났다.

(3) 학생인권의 현실에 대한 교사의 인식

첫째, 인권교육 필요성과 경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한 교사는 97.1%이지만 53.8%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없었다. 인권교육 실시에서 어려운 것은 안정적인교육 확보, 인권교육 내용에 자신이 없는 경우 등이었으며, 교사가 된 후 인권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17.3%밖에 되지 않았다.

둘째, 학생자치권의 경우 교사들은 학생회자치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학생회칙 제정과 개정의 자율권 확보가 필요하다,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간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의견교환 및 조율이 필요하다, 학생회 건의 사항을 교직원회의 등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 등 학생 자치권에 대해 80~90%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셋째, 체벌을 대체할 수단으로 상담전문가와 상담과 치료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92%, 사회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이 체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93.2%. 또한 노동이나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지도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학생체벌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첫 번째 과도한 교사업무 경감, 두 번째 과밀학급해소, 세 번째 학생 간 폭력금지, 네 번째 일제고사 등 학업성적위주의 교육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상벌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체벌이 여전히 존재,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사라짐을 꼽았다.

넷째, 학생 간 폭력, 금품갈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운영 강화가 34.5%,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가 28.3%,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교육이 18.4%, 인권교육 실시가 14.8%였다.

다섯째, 교육환경의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온수가 나오도록 하는 것, 남녀 탈의실 마련, 학생휴게공간 마련, 냉난방 시설, 보건실 확보, 별도의 상담실 확보 등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여섯째, 정규수업외의 특기적성수업, 방과후학교 수업, 자율학습 참여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강제적인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자유롭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6.9%로 교사들도 학생들의 학습의 자유 보장에 긍정적이었다.

일곱째,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집단 따돌림)을 가장 많이 꼽았고, 두 번째로는 야간자율학습 및 강제 과잉학습을 꼽았다. 학생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는 △입시경쟁 해소 → △인권교육 강화 →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 △노후한 교육시설 개선 →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순으로 선택하였다.

(4) 학생인권현실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첫째, 정보접근의 경우 학생생활관련 상벌규정 및 성적관리 규정이 보호자에게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다 56.5%,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30.1%, 잘 모르겠다 11.4%. 40% 가량의 보호자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둘째, 학생 징계시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게 반영된다 29.3%, 형식적으로만 보장된다 24.1%. 잘 모르겠다고 29.9%로 징계와 관련한 당사자 의견진술 보장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셋째,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조금 침해 29.3%, 매우 침해 8.4%로 많은 보호자들이 제대로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는 획일적인 학교 규정(18.9%), 입시 위주의 교육(17.1%), 교직원의 변하지 않는 인권의식(15.3%)과 학교의 폐쇄적인 의사소통구조(13.0%), 보호자 및 성인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11.1%)과 체벌 및 징계(10.5%) 등이었다.

넷째,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개를 꼽아달라고 한 것에서는 22.8%의 보호자가 학교폭력(집단따돌림)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14.8%)과 학생의사표현 규제(14.2%)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꼽아달라고 하자, 가장 많은 보호자가 △권리 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22.8%), 그 다음으로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14.8%),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방지대책 강구(14.2%)라고 응답하였다.

(5)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면접조사

장애, 성소수자, 빈곤, 이주(다문화), 한부모 등의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인권교육의 강화였다. 장애이해, 성소수자 내용을 포함한 실질적 성교육, 다문화 이해, 한부모 등에 있어서 학생,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연구팀은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나 드러내기 어려운 성정체성 같은 경우

에는 구제기구를 통한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해 상담 서비스나 관련 단체를 소개시켜주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학생인권 현실을 성찰하여 '소통과 나눔 속에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그래서 '학생도 교사도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3. 세계 각국의 아동 인권 보장 흐름에 발을 맞추기 위함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0년 '학생 안전 및 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2007년에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실천은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종합조례 형태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는 2000년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市)를 필두로 총 13곳에 이르며, 아동 참여나 학대방지 등 특별한 목적을 두고 아동 권리 조례를 제정한 곳도 16곳이다. 그 외에도 시 정책을 추진하는 원칙으로 아동 권리 보장을 정해둔 지자체도 30여 곳이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 권리 구제기구로서 옴부즈퍼슨(Ombuzperson) 또는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옴부즈퍼슨 또는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권리구제 기능과 행정부 통제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유럽에는 각국에 설립된 독립된 아동인권 관련 기구들 간의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줄여서 ENOC)도 설립되어 있다. ENOC의 구성원은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아르메니아 등 29개국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 인권 옴부즈퍼슨을 설치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지방(8개 지방)에 아동옹호관 또는 아동옴부즈만(children's advocate/ombudsman)이 설치되어 있다. 미국 미시간 주의 아동옴부즈만, 영국의 아동커미셔너, 일본 가와사키 시의 인권옴부즈퍼슨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학생인권을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여 실현하고자 하였다.

II. 주요 내용

1. 총칙

- (1) 조례 제정 목적은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제1조).
- (2)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제2조 제4호).
- (3)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으로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1항)는 점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칙 등 학교의 규정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는 점을 규정하였다.

2. 학생의 인권

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6조).

나.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학생은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제7조).

다. 교육을 받을 권리

- (1)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의적 운영이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참석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제9조).
- (2)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이에 반하여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0조).
- (3) 학생은 적절한 휴식권을 가지며,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제11조).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 (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와 적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학생의 개성실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제12조).
- (2) 교직원(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일괄검사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 (3)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다만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적정절차에 의한 경우에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다(제13조 제4항).
- (4)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제14조).
- (5) 학생은 자신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제15조).

마.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1) 학생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자신의 사상·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
- (2)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제17조).

바.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1) 동아리 등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과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구성과 활동이 독립되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회의의 소집 및 운영 등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8조).
- (2) 학생은 학칙 등 학교의 제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19조).
- (3) 학생은 학교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0조).

사. 복지에 대한 권리

- (1) 학생은 누구나 인간다운 교육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또한 그것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제21조).
- (2) 학교는 청결한 환경의 유지, 적절한 탈의 및 휴게 등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2조).
- (3)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제23조).
- (4)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4조).
- (5)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5조).

아.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의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는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제26조).

자.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27조).

3. 학생인권의 진흥

가. 인권교육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과 교원 그리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인권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제30조 내지 제32조).

나. 인권실천계획 등

- (1) 교육감은 매년 정기적으로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3조).
- (2)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가 실현되고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수준으로 교육시설, 복지시설 및 휴식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34조).
- (3) 학생인권에 관한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제35조).
- (4)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36조).
- (5)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학생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다(제37조).

4.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가. 학생인권옹호관

- (1)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는데,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한다(제39조).
- (2)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는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이다(제41조).
- (3)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 조례를 통해 정한다(제42조).

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 (1)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두는데, 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4조).
- (2) 학생이 학생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권고는 이행되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45조)
- (3)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제46조).

5. 보칙

- (1) 학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제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제47조).
- (2)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제48조).

6. 부칙

- (1)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만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 (2)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

조례 제 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칙 등 학교의 규정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의 인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언급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록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9조(학습권)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의적 운영이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참석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반하여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 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자신의 사상·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학생은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구성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학교는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자격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회의의 소집 및 운영 등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규정 제·개정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의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또한 그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누구나 인간다운 교육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상담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청결한 환경의 유지, 적절한 탈의 및 휴게 등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문화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실현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간 및 지역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4조(학교급식권)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건강권)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 제26조(징계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해야 한다.
- ③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는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제9절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

제27조(상담 및 조사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29조(홍보) 교육감은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해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설명서를 제작·배포 관 등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정기적으로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가 실현되고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수준의 교육시설, 복지시설 및 휴식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소수자들의 의견반영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0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3.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4.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5.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대우)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제44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6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5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장, 교원, 학부모,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8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초안의 작성 배경과 근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초안'은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통로로 경기도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고, 초안의 축조 심의 과정에서도 그 의견을 십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경기도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 '자문위원회 초안'

1. 6개 권역 사전협의회를 통한 설문조사

- 자문위원회는 경기도내 6개 권역을 돌면서(애초 9개 지역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신종플루 위험으로 3개 지역은 취소됨) 사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회의 기본 철학과 원칙을 설명드리고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 설문조사에는 학생 177명, 보호자 128명, 교사 141명, 학교관리자 69명 등 총 515명이 참여해주었습니다.

2. 연구용역을 통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 자문위원회는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를 중심으로 꾸려진 연구진에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의식 조사와 학생인권 증진 제도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연구용역팀은 △학생 2,020명(초등 934명, 중·고 1,086명) △교사 586명 △경기도 거주 보호자 345명 등 총 2,9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의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학생 소수자와 관련하여서는 좀더 깊이있는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장애 △이주(다문화) △빈곤 △한부모가정 △학생선수 △성소수자 등 학생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3. 학생참여기획단과 자문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는 경기도내 학생 400여 명으로 구성된 학생참여기획단을 두어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 경기도 교육주체들의 제정 요청에 화답한 '자문위원회 초안'

- 자문위원회 초안은 경기도 교육주체들의 열망에 대한 화답입니다. 자문위원회가 지난 5개월간 활동해 오면서 다양한 교육주체들을 만나본 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 보호자의 경우 80~90% 이상이 조례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경우에도 높은 공감대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관리자의 경우에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p align="center"><표 1> 경기도 학생 인권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p>								
구분		① 매우 공감	② 약간 공감	긍정적 대답	③ 별로 공감 하지 않음	④ 전혀 공감 하지 않음	부정적 대답	응답자수
학생	명	108	60	168	8	1	9	177
	비율(%)	61.02	33.90	94.92	4.52	0.56	5.08	
교사	명	38	55	93	36	12	48	141
	비율(%)	26.95	39.01	65.96	25.53	8.51	34.04	
보호자	명	58	47	105	18	5	23	128
	비율(%)	45.31	36.72	82.03	14.06	3.91	17.97	
학교 관리자	명	9	32	41	22	6	28	69
	비율(%)	13.04	46.38	59.42	31.88	8.70	40.58	
계								515

※ 6개 권역 사전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 연구용역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학생 당사자(중·고등학생 1086명 중 961명이 응답)의 의견이 87.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찬성한다	947	87.4
반대한다	14	1.3
의견없음	123	11.3
합 계	961	88.7.0
※ 진영종 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 경기도 교육주체들의 높은 공감을 얻은 철학에 기초한 ‘자문위원회 초안’

- 자문위원회 초안은 경기도 교육주체들의 높은 공감을 얻은 철학에 기초해 작성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 학생인권 보장에 있으며, “자유로운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는 철학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을 열 가지 열쇠말을 통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학교의 전망’ 10가지 열쇠말

1. 학생은 존엄한 권리의 주체이다.
2. 학교는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배움터여야 한다.
3.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다. 학교는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야 한다.
4. 배움은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5. 책임은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6. 학교는 학생의 학습뿐 아니라 삶도 돌봐야 한다.
7. 학생의 모든 권리는 연관되어 있고 돌봄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의견과 자유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8. 학교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생을 돌봐야 한다.
9. 교사는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고 학생의 언덕이 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10.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때 권리는 비로소 의미있어진다.

위와 같은 자문위원회의 기본 정신과 철학에 대해 교육주체들의 공감 정도도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훈련되어야 하고 책임은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길러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정도도 학생 87.56%, 보호자 78.91%에 이르렀고, 교사 역시 절반 이상인 56.3%가 긍정적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표 3> ‘경기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에 담긴 자문위의 기본정신과 철학에 공감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공감	② 약간 공감	긍정적 대답	③ 별로 공감 하지 않음	④ 전혀 공감 하지 않음	부정적 대답	응답자수
학생	명	72	86	158	18	1	19	177
	비율(%)	40.68	48.59	89.27	10.17	0.56	10.73	
교사	명	31	67	98	31	12	43	141
	비율(%)	24.11	47.52	71.63	21.99	8.51	30.5	
학부모	명	54	47	101	25	2	27	128
	비율(%)	42.19	36.72	78.91	19.53	1.56	21.09	
학교 관리자	명	12	32	44	21	4	25	69
	비율(%)	17.39	46.38	63.77	30.43	5.80	36.23	
계(명)								515

※ 6개 권역 사전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 경기도 교육주체들이 바라는 학생인권 과제를 고루 반영한 ‘자문위원회 초안’

: △‘자유·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세 기둥 위에 학생인권 기준 제시

- 자문위원회 초안은 경기도 교육주체들이 지목한 학생인권 과제들을 수렴하여 △ ‘자유와 참여’ 인권 △‘복지’ 인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인권이라는 세 개의 기둥 위에 학생인권이 튼튼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구성했습니다. [자유와 참여 인권]에는 두발자유, 학생자치활동 보장, 학생의견 존중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복지 인권]은 과잉학습 규제, 상담과 교육 지원 등 교육복지 강화 등이, [안전 인권]에는 체벌·언어폭력 금지, 왕따 등 집단괴롭힘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전협의회에서 파악된 의견

- 사전협의회에서 학생인권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5가지 과제를 선택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결과,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조례의 구체적 내용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사전협의회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교육 주체별 학생인권 과제를 재구성해 보면 <표 4>와 같습니다.

**<표 4> 학생인권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섯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항목	학생 (177명)		교사 (141명)		보호자 (128명)		학교 관리자 (69명)		계 명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1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119	67.23	50	35.46	44	34.38	13	18.84	226
2	왕따 등 집단 괴롭힘 금지	85	48.02	84	59.57	84	65.63	43	62.32	296
3	자율적 학생회 · 학생활동 보장	99	55.93	67	47.52	48	37.5	48	69.56	262
4	무작위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보장	52	29.38	27	19.15	26	20.31	13	18.84	118
5	각종 고민상담, 교육 지원 등 학생 복지 강화	60	33.90	79	56.03	84	65.63	69	100	295
6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59	33.33	29	20.57	61	47.66	30	43.48	179
7	학생인권 침해 구제 수단 강화	39	22.03	18	12.77	38	29.69	21	30.43	116
8	체벌 금지	80	45.20	40	28.37	37	28.91	41	59.42	198
9	가정형편/성적/용모 차별 금지	66	37.29	49	34.75	43	33.59	31	44.93	189
10	야간자율학습 등 과잉학습 강제 금지	89	50.28	64	45.39	48	37.5	37	53.62	238
11	각종 문화 활동 접근과 참여 보장	40	22.60	44	31.21	42	32.81	44	63.77	170
12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수집단차별 금지	26	3.09	31	21.99	20	15.63	39	56.52	116
13	인권교육 강화	25	14.12	41	29.08	33	25.78	47	68.12	146
14	기타	3	1.69	0	0	0	0	0	0	3
계		991		723		703		498		2,403

※ 6개 권역 사전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생	두발·복장	자치활동	과잉학습	집단괴롭힘	체벌
교사	집단괴롭힘	상담 등 복지	자치활동	과잉학습	두발·복장
보호자	집단괴롭힘 / 상담 등 복지		징계	자치활동 / 과잉학습	
관리자	자치활동	인권교육	문화권	집단괴롭힘	체벌

◎ 연구용역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의견

- 연구용역팀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학생, 교사, 보호자의 바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의 언어폭력과 집단괴롭힘을, 중등학생의 경우 두발·복장 규제를, 교사와 보호자는 모두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과 강제 과잉학습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강제 야자·보충수업 문제나 두발규제 등에 대해서도 학생뿐 아니라 상당수의 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생	초등	언어폭력 433명(12.5%)	학교폭력 330명(9.5%)	잡은 학교시험 280명(8.1%)	벌세우기 264명(7.6%)	신체적 폭력(체벌) 255명(7.3%)
	중등	두발규제 770명(24.8%)	복장규제 580명(18.7%)	강제 과잉학습 464명(15.0%)	단체기합 및 체벌 278명(9.0%)	학생의사표현 규제 277명(8.9%)
교사		학교폭력(집단 따돌림) 410명(24.0%)	강제 과잉학습 348명(20.4%)	두발규제 174명(10.2%)	학생의사표현 규제 151명(8.8%)	단체기합 및 체벌 141명(8.3%)
보호자		학교폭력(집단 따돌림) 233명(22.8%)	강제 과잉학습 152명(14.8%)	학생의사표현 규제 145명(14.2%)	단체기합 및 체벌 109명(10.6%)	두발규제 103명(10.1%)
※ 진영중 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 경기도 학생들의 참여에 기초한 '자문위원회 초안'

- 자문위원회에는 현재 학생 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성상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자문위원회는 홈페이지와 학생참여기획단 구성을 통해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건의게시판(작성글 119건)과 자유게시판(작성글 90건) 의견들을 분석해보면, 학생 당사자들은 △**두발의 자유 보장**(두발길이 자유가 압도적) △**과잉 강제 학습 금지**(강제적으로 실시되는 0교시, 보충수업, 야간학습 폐지) △**학생자치활동 보장** △**체벌·언어폭력 금지** △**학생 의견 존중** 등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1> 참조). 자문위원회 초안은 이러한 요구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참여기획단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 글들을 읽고 난 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좀더 깊이있는 의견을 제출해 주었습니다(총 230여 건의 글 제출.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2> 참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한 다양한 권리 내용을 접한 덕분인지 학생참여기획단은 △**두발규제** △**강제 보충과 야자** △**체벌 금지** △**학생자치활동 보장**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의제 외에도 △**문화권 보장** △**실효성있는 권리구제 기구 설치** △**장애학생 등 차별 금지와 평등 교육** △**교육에서의 선택권 존중**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극 홍보와 교육** 등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또한 학생참여기획단은 연구용역팀이 제시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보완 의견을 추가로 제출해 주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축조 심의과정에서 학생참여기획단의 의견을 소중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 경기도 교육주체들이 제시한 학생인권 증진 과제를 수용한 '자문위원회 초안'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인권의 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이 다각도로 입안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학생참여기획단 등을 통해 경기도 교육주체들이 학생인권을 위한 과제로 꼽아준 것들 가운데 △**입시경쟁 해소** △**인권교육 강화** △**권리 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실효성있는 권리구제기구의 설치** 등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입시경쟁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권과 학습선택권 보장으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교사·보호자 모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교육청의 지원으로, [권리 중심의 학교

생활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와 인권지킴 제시, 학생 참여권 보장으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기구의 설치]는 학생인권옹호관과 지역교육청별 인권상담실 설치, 인권 진정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으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표 7>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복수응답)						
구 분	중·고등학생		교사		보호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입시경쟁 해소	489	16.0	447	26.0	103	10.1
인권교육 강화	261	8.5	227	13.2	80	7.8
노후한 교육 시설 개선	188	6.2	197	11.4	109	10.6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368	12.0	176	10.2	32	3.1
권리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278	9.1	108	6.3	233	22.8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237	7.8	119	6.9	60	5.9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방지대책 강구	124	4.1	76	4.4	145	14.2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325	10.6	76	4.4	56	5.5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474	15.5	207	12.0	152	14.8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및 선택권 부여	310	10.2	88	5.1	54	5.3
합 계	3,054	100.0	1,721	100.0	1,024	100.0

※ 진영중 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참고자료 1> 자문위원회 홈페이지에 제시된 조례안 의견 모음

* 12.16일 오전 현재

[학생이 직접 만드는 조례 게시판]				
번호	글쓴이	신분	글 쓴 날	주요 의견
1	이승환	고등학생	09.10.06	두발규제 폐지, 강제이발 금지
2	안성 학부모	학부모	09.10.14	운동장 아침조회 폐지-> 방송조회로 대체
3	학생회장	학생	09.10.31	시도 단위 학생인권단체 필요. 시도 단위 학생대표 모임.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인권교육
4	커트코베인	-	09.11.01	강제 야자/방과후수업/방중 보충수업 금지
5	학생	학생	09.11.03	학생회 결정사항 일반 학생들에게 전달. 일반 학생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회의 개방
6	학생인권	수원 인문고 학생	09.11.03	두발규제 완화. 학생의견 무시(건의사항 존중). 벌점 남용 규제(통일된 기준 제시). 교사 언어폭력 중단
7	학생	고등학생	09.11.03	벌점제 중단. 두발규제 완화. 두발규정 일방적 개정 중단. 보충수업 시 수업선택권 보장(선착순 신청). 강제 야자 중단
8	건	학생	09.11.04	두발자유
9	규제완화	학생	09.11.04	두발규제 완화. 교사의 자의적 기준 적용 반대
10	혁명가	학생	09.11.04	대학 평준화. 대학에 꼭 가지 않아도 되도록.
11	온수온수	학생	09.11.04	온수 제공(체육관과 교직원화장실에만 온수 제공되고 있음)
12	MR.피해자	학생	09.11.04	두발 자유. 반강제적 야자 금지
13	202	학생	09.11.04	강제 야자 금지. 학생 의견 존중
14	투쟁인	학생	09.11.04	자의적 체벌, 차별적 체벌. 두발규제 폐지
15	이건뿔미	학생	09.11.04	강제 야자 금지
16	학생	학생	09.11.04	야자, 방중 보충수업 강제 금지(반강제적 동의서 제출 요구). 학생 체벌과 폭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
17	김형준	중학생	09.11.04	동의 절차도 없이 반강제적 방과후 자율학습 (자율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동의를 거치도록, 동의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 금지 명시)
18	고등학생	학생	09.11.05	보충수업, 야자 자율화
19	지금은법사 시간	학생	09.11.05	야자 자율
20	지각	고등학생	09.11.05	지각을 이유로 한 체벌 금지
21	ㅇㅇㅇ	학생	09.11.05	야자 자율
22	고등학생	-	09.11.05	두발규제 완화
23	방학보충	학생	09.11.05	방학보충 자율

24	호범	고등학생	09.11.05	두발 자유(길이 제한 금지)
25	띠옹	학생	09.11.05	교복 너무 춥다
26	?		09.11.05	학생 의견 존중. 야자/보충 자율. 두발, 복장규정 등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정
27	김종필	학생	09.11.05	수학여행 취소되었다면 대체 여행 가야
28	언제 끝나	학생	09.11.05	수업 선택권 보장
29	김효진	학생	09.11.05	야자 자율. 두발규정은 학생들에게 맡겨라. 학생들 건의사항과 의견에 정당한 관심을.
30	ㅎ	학생	09.11.05	보충, 야자, 방학 보충 자율. 온수 제공
31	나도종필	-	09.11.05	두발 길이 자유
32	밥태딩	학생	09.11.05	야자 자율
33	???????	-	09.11.05	야자, 보충 희망자만!
34	>.<	학생	09.11.05	머리 길이만이라도 자유
35	고등학생	학생	09.11.05	학생 의견 먼저 묻기. 학생에 대한 비하 발언이나 욕설 금지. 벌점제 시행시 체벌 금지. 동아리 활동 지원금 증대. 야자 자율
36	1인	학생	09.11.05	야자 자율
37	사람	학생	09.11.05	보충, 야자 자율
38	ㅇㅅㅈ	학생	09.11.05	두발 길이 자유. 강제 이발 금지
39	ㅇㅇㅇ	학생	09.11.06	두발 길이 자유
40	야자싫어	학생	09.11.06	0교시 금지. 보충, 야자 자율
41	한수	학생	09.11.06	학생의 의견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와 기구 필요
42	현우오빠	학생	09.11.07	등교 시간 늦춰라
43	히당	학생	09.11.07	야자 자율
44	최설리	학생	09.11.07	벌점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아달라
45	말좀들어 이사람아	학생	09.11.07	학생회 의사 실질적 반영
46	ZOMBIE	학생	09.11.07	야자 자율
47	옵티머스프 라임	학생	09.11.07	야자, 방과후 자율
48	!!	학생	09.11.07	체벌 자의적 시행 금지
49	메가트론	학생	09.11.07	야자 자율
50	왈라키아	학생	09.11.07	야자 자율
51	오바상	학생	09.11.07	야자 자율
52	스터	학생	09.11.07	벌점 공평하게. 기준이 교사마다 다르다
53	링딩동	학생	09.11.07	교사 막말 금지. 성희롱 발언 금지
54	누리꾼	고등학생	09.11.07	야자 자율. 두발규제 폐지(사생활 간섭). 교사 언어폭력 금지. 학생 의견 반영
55	인걸's	학생	09.11.07	두발규제 반대. 복장규제 완화. 벌점제 시행 반대. 보충 자율
56	忘in거리	학생	09.11.07	학생 의견 반영

57	김태희	학생	09.11.07	교복 치마길이 규제 반대. 두발 길이 자유. 모욕적 체벌 금지
58	헌곤	학생	09.11.07	폭언, 체벌 교사 제재.
59	이효리	학생	09.11.07	벌점제 폐지(자의적 벌점 부과). 두발규정, 복장규정 폐지.
60	오타쿠	학생	09.11.07	선택과목 확대. 특성화 교육
61	스지ㅎ	학생	09.11.07	보충수업 희망 과목 들을 수 있게.
62	지르루루	학생	09.11.07	폭언, 체벌 금지. 벌점제 중단
63	피해자2	학생	09.11.07	체벌 금지
64	소년시대	학생	09.11.07	두발, 복장 규정 폐지. 벌점제 폐지
65	범블비	학생	09.11.07	야자, 보충 자율. 모욕적인 교사 언어폭력 금지
66	나야블로	학생	09.11.07	자의적 교칙 적용, 벌점 부과 반대. 야자, 보충 자율.
67	빠끔빠끔	학생	09.11.07	두발, 복장규제 폐지. 야자 자율.
68	두발킹	학생	09.11.07	두발 자유
69	돈취	학생	09.11.07	두발 자유
70	전윤수	학생	09.11.09	야자 자율
71	이상미	학생	09.11.09	두발규제 완화.
72	스ㅎ	학생	09.11.09	두발, 복장 규제 완화. 교사 막말 금지. 동아리&CA 활동 지원.
73	전윤수	학생	09.11.09	동아리 설립 보장. 학생 의견 존중 반영.
74	작년교무실 청소	학생	09.11.09	교무실 청소는 교사들이.
75	ㅋ	학생	09.11.09	두발 자유. 명찰 착용 금지. 야자, 보충 자율.
76	AH고부회장	학생	09.11.09	교사 언어폭력(욕) 금지
77	이경민	인문고 학생	09.11.10	삶의 이유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체벌 금지. 경기도 공통의 두발규정. 보충, 야자 자율.
78	고등학생	학생	09.11.12	학생인권 보장 법률조항들 실효성 없음. 체벌 금지. 교사의 언어폭력 금지
79	학생인권	-	09.11.12	두발 길이 자유
80	ㅋㅋㅋ	수원 고등학생	09.11.12	두발검사 가혹(야자 10시 끝나고 머리 당장 잘라야. 미용실 못 찾아 못 자르고 오면 체벌)
81	학생	학생	09.11.12	공개수업은 있는 그대로.
82	행신고학생	학생	09.11.13	1. 인권 침해(두발, 체벌) 2. 행복추구권 침해(강제 야자, 강제8교시) 3. 교사의 언행 문제 개선 4. 학생 진로 무시한 획일 교육 5. 동아리 활동 제한
83	ㅋㅋㅋ	학생	09.11.15	두발 자유
84	학생	수원 인문고	09.11.17	두발 길이 자유. 교복 치마 단속과 압수 금지. 남학생에 대한 구타 수준의 체벌 금지. 복장 규정 완화(추운데도 외투 못입게).
85	이서진	학생	09.11.17	야자, 보충 자율
86	학생인권	학생	09.11.18	두발 규제 완화. 보충, 야자 자율. 체벌 반대(벌점 쌓이면 푸른교실로 가서 체벌). 휴대폰 소지 금지 반대. 교사 욕설 금지. 학생의견 존중

87	학생	학생	09.11.20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달라
88	김정숙	학생	09.11.21	야자, 보충, 0교시 자율.
89	학생	학생	09.11.21	방중 보충 자율
90	학생	학생	09.11.21	야자, 오자, 보충 자율. 두발 규제 완화. 복장/두발 규제 위반시 체벌이나 벌점 부과 반대.
91	두발자율	학생	09.11.21	두발 자율. 염색, 파마 등은 제재.
92	학부모	수원 중3 학부모	09.11.24	야자 자율
93	고등학생	학생	09.11.25	두발 자유. 야자, 보충 자율. 조례 제정 이후 이행이 보장되도록 엄격하게 적용
94	두발	학생	09.11.28	두발 길이 자유
95	전주사는학생	학생	09.11.28	교복 외투 제한 반대
96	자유를	수원 인문고 학생	09.11.29	두발 길이 자유. 교사 욕설 금지
97	김태형	학생	09.11.29	두발 길이 자유. 교내 매점 설치
98	고딩	학생	09.11.29	두발 자유. 야자, 보충 자율. 체벌 금지. 학생인권 보장과 함께 교사 인권도 보장.
99	s고	수원 학생	09.11.30	두발 자유. 체벌 금지. 교사-학생의 수평적 관계
100	수원 학생	h중 학생	09.12.01	두발 규제 완화. 두발 검사 폐지. 체벌 금지.
101	중학생	학생	09.12.01	두발 규제 완화.
102	고딩	학생	09.12.02	두발 길이 자유.
103	두발자유	학생	09.12.02	두발 길이 자유.
104	안산고등학생	학생	09.12.03	야자 자율. 두발 규제 완화. 체벌 도구 규제. 보충 자율.
105	고	학생	09.12.08	두발 자유. 학생 의견 존중
106	모든학교두발자유	학생	09.12.09	두발 자유
107	자유	학생	09.12.10	두발 자유(길이라도 자유)
108	영신	(예체능) 학생	09.12.11	야자, 보충수업 자율
109	수성고 학생	학생	09.12.12	0교시 폐지
110	경기도 학생	학생	09.12.16	두발 자유. 야자 자율. 복장 자율.

[열린 게시판]				
번호	글쓴이	신분	글쓴날	주요 의견
1	김산	김포 학부모	09.09.24	야자, 보충 자율
2	학생	학생	09.09.24	야자, 보충 자율. 두발 길이 자유.
3	수원의 한 고등학생	학생	09.09.24	야자 자율. 등교시간 조정(너무 이름).

4	새고 부회장	학생	09.09.25	야자, 보충 자율
5	고등학생	학생	09.09.26	야자 자율
6	김아롱	성남 서여고생	09.09.26	두발 자유(최소 길이 자유). 강제 이발 금지.
7	김여남	고등학생	09.09.27	신발 규제 반대. 두발 길이 자유.
8	학생	수원 고등학생	09.09.28	두발 규제 반대. 야자, 보충 자율.
9	학생	수원 인문계 고등학생	09.09.28	체벌(매 타작) 금지
10	aaa	고등학생	09.09.28	두발 자유. 구두만 신으라고 하는 규정 폐지
11	S고	고등학생	09.09.29	야자, 보충(방과후학교) 자율
12	추민수	인문고 학생	09.09.29	야자, 보충 자율
13	고등학생	학생	09.10.03	야자 자율
14	난사람이다	고등학생	09.10.04	야자 자율. 두발 길이 자유.
15	외국지식인	-	09.10.06	두발 자유. 체벌규정 엄격히.
16	지수	학생	09.10.09	두발, 양말/신발/가방 규제 반대.
17	무서워	학생	09.10.10	두발 규제 완화.
18	고등학생	인문고 학생	09.10.13	야자 자율
19	답글	부천 고등학생	09.10.14	야자 자율
20	하우	고등학생	09.10.14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학생 참여, 의견 존중
21	인권존중	고등학생	09.10.26	야자 자율
22	문양숙	파주 학부모	09.10.29	학생인권 제도화 서둘러야. 교권 보장과 조화 이루어야. 시범학교 실시해 본 이후 전체로 확대하면 어떨까.
23	고등학생	학생	09.10.29	시범학교 실시 반대
24	김정열	학부모	09.11.02	시범학교 실시 반대. 조속한 조례 제정
25	인귀니	교사	09.11.02	학생인권 조속 보장. 학생인권 보장한다고 교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26	가순경	인천 학부모	09.11.04	학생, 학부모 의견을 무시하는 언어폭력 금지.
27	살려줘	학생	09.11.04	야자 자율
28	완역판	고등학생	09.11.04	교권 추락은 인성교육 부재와 입시위주 교육 탓이지 학생 인권 때문 아님
29	고등학생	학생	09.11.05	야자, 보충 자율
30	학생답게	학생	09.11.05	학생 모욕(폭언, 희롱, 체벌) 금지.
31	ㅇㅅㅈ	학생	09.11.05	복장 규제, 손톱검사 금지(선도부 아침 교문단속+점심시간 단속 심각). 머리 길이 자유
32	ㄴㄴㄴ	중학생	09.11.06	교사 언어폭력, 체벌 금지
33	학생인권	학생	09.11.06	학생 인권 존중. 언어폭력, 체벌 금지
34	J.M	학생	09.11.08	교사에 의한 차별(성적 차별) 금지. 언어폭력 금지
35	흰수염	-	09.11.09	두발 단속 금지
36	고등학생	학생	09.11.09	학생 의견 반영. 체벌 금지. 벌점제 남용 금지

37	...	학생	09.11.09	체벌 금지. 보충 자율.
38	ㅋ-ㅋ	학생	09.11.09	복도에서 교사들의 흡연 금지
39	tct	학생	09.11.10	교칙 책자 도서관에 비치. 열람 가능토록 공개. 학생만 규제하는 교칙은 안 됨. 교사도 포함해야.
40	tct	학생	09.11.10	모욕적 체벌 금지. 체벌 관련 규정 내용 명확히.
41	tct	학생	09.11.10	학부모 무시하는 발언 금지.
42	김영	-	09.11.10	학부모 무시하는 발언 금지.
43	없음	학생	09.11.13	체벌 금지(특히 얼굴 때리는 체벌). 두발규정 위반으로 사회봉사 보내는 것 반대.

<참고자료 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학생참여기획단 의견 모음

: 학생참여기획단 운영진은 400여 명의 학생참여기획단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오름에 연재된 <학생인권 마술피리> 연재글을 읽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그 결과 총 230여개의 글이 제출되었고, 구체적 제안이 있는 의견 190여 개를 추려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정리하였음.

번호	글쓴이	글 쓴 날	주요 의견
1	안양/고1	11.16~11.26	학생 의견이 반영된 인권 조례 제정. 어른들의 인식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 추후 홍보 필요.
2	안양/고1	11.16~11.26	차별 금지
3	고양/고3	11.16~11.26	학생들만의 단체 만들기. 실효성 있는 구제기구 필요(교육청 민원 잘 해결 안됨)
4	평택/고2	11.16~11.26	학생들의 의견을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도구 필요.
5	수원/고2	11.16~11.26	장애학생 지원 시설. 상벌점제 벌점항목 교사들의 주관적 집행 반대. 두발, 복장 제제 완화. 학생들 의견 표출의 장 필요
6	고양/중1	11.16~11.26	체벌 반대. 교사 대상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법 교육.
7	시흥/고2	11.16~11.26	사생활 간섭 금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교육을 통한 잠재력 계발 보장. 체벌금지
8	의정부/고2	11.16~11.26	유엔아동권리협약 17조, 18조, 34조 보장. 조례 내용에 학생 의견 반영.
9	수원/고1	11.16~11.26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장애아동권리보장
10	부천	11.16~11.26	학생위원회 구성과 소통. 학교의 주인은 학생임을 조례에 명시하고 학교운영에서 학생 의견 존중.
11	부천/고2	11.16~11.26	평등한 교육 보장
12	안양/고2	11.16~11.26	두발, 복장부터 시작해 생활태도와 사적인 사정들까지 간섭 반대. 야자 자율(명칭만 야간자기주도학습으로 바꾸면서 정당화해서는 안됨).
13	화성/고1	11.16~11.26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 선택제 필요. 학생들 자유권 보장. 학생 의견 존중(선생님과 학부모의 지나친 반대 제한)
14	안산/고1	11.16~11.26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구체화한 조례 제정
15	의정부/고1	11.16~11.26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정통신문으로 알리기
16	과천/고1	11.16~11.26	학생에 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
17	용인/고2	11.16~11.26	학생에게 가해지는 폭력, 억압, 구속, 탄압 등을 규제. 복장규제와 두발단속 반대. 학생집회 보장.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학생인권 관련 일반처벌 규정보다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인 처벌규정의 공정성 요구

18	수원/권 선고	11.16~11.26	아동의 인권 침해를 막는 제도 필요.
19	하남/고2	11.16~11.26	차별 금지. 체벌금지.
20	안양/고2	11.16~11.26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0교시, 야자강제학습 등 과도한 교육적인 압력으로 학생 자유 억압 반대. 강제이발 금지. 교사의 지나친 체벌 금지.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필요
21	고양/중1	11.16~11.26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 강요 반대. 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안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
22	고양/고3	11.16~11.26	학생 인권교육. UN아동권리협약 홍보.
23	화성/고1	11.16~11.26	부가 활동시간, 아르바이트 시간 보장. 야자와 보충수업 금지. 학생부의 권한 보장. 학생부에게 교칙 제정권 보장. 학생들의 의견보장
24	고양/고1	11.16~11.26	학생을 어른들과 동등한 위치로 인식. 표현의 자유 보장.
25	파주/고2	11.16~11.26	획일적, 강압적, 주입식 교육 반대. 학생의 자율성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교복, 두발, 야자 자율.
26	용인/고2	11.16~11.26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아동과 청소년의 자유, 권리 보장. 야자 폐지
27	광주/고2	11.16~11.26	아동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28	의왕	11.16~11.26	두발이나 용의복장 자유. 표현의 자유. 교칙을 없애자
29	부천/고1	11.16~11.26	자유권, 건강권, 표현의 자유 보장. 사생활 보호. 모임의 자유. 인격 존중
30	수원/고2	11.16~11.26	체벌 금지. 야자 자율. 표현의 자유. 성적 차별 금지.
31	부천/고1	11.16~11.26	선생님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보장
32	수원/고2	11.16~11.26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보장. 비인간적이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반대. 자율의지로 학교규율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
33	수원/고2	11.16~11.26	의사표현의 자유. 신체적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여가활동을 즐길 권리 보장.
34	수원/고2	11.16~11.26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보장
35	안산/고2	11.16~11.26	재능 숨겨진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켜주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자유 박탈 금지. 강제노동 금지. 체벌, 차별금지. 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
36	안양/고2	11.16~11.26	자유로운 교육과 적성 개발, 학생의 자유를 존중
37	안양/고1	11.16~11.26	장애학생 보호
38	고양/고 딩	11.16~11.26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보장.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 학생인권조례 학생참여단에 대한 지원 필요.
39	시흥/고1	11.16~11.26	학생 인격을 존중하는 학교규율
40	성남/고1	11.16~11.26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보장. 문화예술 활동 참여권 보장. 보충, 야자 자율. 법적으로 2주에 한 번씩은 보충수업 대신 문화활동을 하도록 하는 정책 필요
41	부천/고1	11.16~11.26	사생활의 보호. 학대 유기 반대와 사회복귀 지원. 교육권 보장. 인격을 존중하는 학교규율.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보장.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처벌 금지.
42	수원/고2	11.16~11.26	자유로운 의사 표현

43	고양/고1	11.16~11.26	표현의 자유. 청소년 자살률에 관한 관심필요
44	안양/고1	11.16~11.26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 사교육 없애기
45	고양/고2	11.16~11.26	체벌 금지
46	남양주/ 고1	11.16~11.26	아동의 능력과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 보장. 표현의 자유. 체벌금지. 장애학생에 대한 인격 존중과 적극적 사회참여 보장.
47	안산/고1	11.16~11.26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48	부천/고1	11.16~11.26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조례에 반영.
49	의정부	11.16~11.26	아동노동 개선.
50	화성/고2	11.16~11.26	표현의 자유. 학생들의 편의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
51	남양주/ 초3	11.16~11.26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준수 필요.
52	부천/고1	11.16~11.26	인권보호위원회(학생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단체) 설치
53	용인/고2	11.16~11.26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실효성있게 집행.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끔 구체화.
54	부천/고1	11.16~11.26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인정.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인정. 인권과 평화에 대한 교육 보장. 인격을 존중하는 학교교육.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보장.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 등으로부터의 보호. 잔혹하거나 비안간적인 처벌 금지. 착취로부터의 보호.
55	부천/중3	11.16~11.26	아동이 생활하기에 좋은 교육환경. 표현의 자유
56	안양/고1	11.16~11.26	학생의 자유 존중
57	용인/고2	11.16~11.26	표현의 권리 보장.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 체벌반대
58	동두천/ 고1	11.16~11.26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59	광명/고1	11.16~11.26	표현의 자유 보장.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 보장. 교육의 목표 바로잡기
60	안양/고1	11.16~11.26	학교의 책임 보완.
62	용인/고1	11.16~11.26	장애학생의 인격 존중. 표현의 자유 보장. 성적 차별 금지. 일제고사, 비평준화, 특목고 반대
63	하남/고1	11.16~11.26	소지품검사, 복장검사 반대
64	화성/고1	11.16~11.26	문화활동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확보
65	용인/고1	11.16~11.26	학생인권조례,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66	수원/고2	11.16~11.26	입시스트레스 해결방안 제정
67	구리/고1	11.16~11.26	동성애 보장
68	용인/중3	11.16~11.26	체벌반대
69	수원/중2	11.16~11.26	학생회 설치 의무화. 학생회 발언권, 학교운영참여권 보장. 학생들에게 인권조례 내용 교육, 홍보 의무화. 학교마다 상담전문교사 채용
70	안양/고1	11.16~11.26	차별, 가혹한 처벌 등 조례를 통해 규제 필요. 조례의 현실 적용.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들도 조례에 대해 숙지
71	안양/고1	11.16~11.26	표현의 자유. 학생의 의견 교육청에 직접 개진

72	수원/고1	11.16~11.26	다양한 경험을 위한 활동의 자유 보장. 교사 욕설에 대한 학생의 경고 보장. 교육청에 부적절 교사 신고란 설치. 조례에 대한 법적 보장. 교사와의 토론 시간 확보
73	안양/초6	11.16~11.26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여가활동시간 보장
74	수원/고1	11.16~11.26	조례제정 시 '자율선언문'과 같이 공표되어야
75	용인/고2	11.16~11.26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보장. 유엔아동권리협약보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 필요
76	화성/고2	11.16~11.26	교내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 구체적인 조례 제정 필요
77	부천/고2	11.16~11.26	야자, 0교시 철폐. 잠재적 능력개발의 기회 확대. 교내 복장, 두발규제 완화. 부모 이혼 시 아동의 발언권 확보
78	안양/고1	11.16~11.26	당연한 권리의 대중적 인식, 보장. 두발규제, 체벌 등 금지.
79	고양/고2	11.16~11.26	인권침해사건 발생시 중재자적 기관 필요. 교사들의 심리상담 관련 과목 이수 의무화
80	시흥/고2	11.16~11.26	교육위, 학교운영위 학생 참여 보장. 체벌금지
81	성남/고1	11.16~11.26	다문화가정 자녀 인권보장.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82	의정부/초6	11.16~11.26	성인 위한 각종 행사에 아동 동원 금지. 규칙의 엄격한 적용
83	충주/고1	11.16~11.26	아동성폭력, 가내폭력 관련 조례 제정. 학교 상벌점제 관련 확실한 기준 필요
84	군포/중3	11.16~11.26	학생을 인격체로서 대우.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조례 제정
85	하남/고2	11.16~11.26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례안 제정. 학생들이 조례안 직접 제정
86	고양/고2	11.16~11.26	구체적인 조례안 제정. 학생 요구사항 관련 정확한 선행조사 필요
87	용인/중3	11.16~11.26	조례의 홍보와 교육.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정
88	용인/고2	11.16~11.26	보충, 야자 자율. 신체의 자유 보장. 처벌 시 학생의 자발적 반성 유도하는 처벌 시행
89	남양주/고2	11.16~11.26	조례안의 학생 참여 보장.
90	부천/고2	11.16~11.26	유엔아동권리협약보다 구체적인 조례안 필요. 세부적 실태 파악 필요
91	의정부/고2	11.16~11.26	기획단의 거리 캠페인, 봉사활동 참여. 협약의 궁극적 목표 홍보
92	안산/고1	11.16~11.26	조례안에 학생 의견이 중심이 되도록 작성. 학생인권 보장 제도 포함.
93	안산/고2	11.16~11.26	학교생활 관련 조례 필요. 아동성폭력 규정 강화, 개정
94	수원/고2	11.16~11.26	조례에 강제권 부여. 학생들이 조례에 의거, 위협 없이 호소할 수 있는 제 3의 공간 필요
95	수원/고1	11.16~11.26	야자, 보충 자율. 두발 규정 완화
96	수원/고2	11.16~11.26	강제적 우월반 편성 금지(선택제). 학생들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적용. 월 몇 번씩 야자, 보충 빼고 휴식, 문화생활 즐길 수 있는 법 제정

97	용인/고1	11.16~11.26	장애아동 관련 조례안 강화
98	화성/고2	11.16~11.26	조항들의 제도화. 교육 및 직업관련 정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99	수원/고2	11.16~11.26	유엔아동권리협약 29조(교육목표)를 중심으로 조례, 제도 제정
100	용인/고2	11.16~11.26	표현의 자유, 발언권 보장
101	파주/고2	11.16~11.26	집회 참여의 자유. 집안문제 공개로 인한 피해 금지. 인권에 기반한 교칙 필요
102	안성/고2	11.16~11.26	조례 제정 시 명확한 기준 필요. 자유와 개성 존중
103	용인/고1	11.16~11.26	표현의 자유 보장. 학교 체류 시간 축소. 학생의 존엄성 존중
104	수원/고2	11.16~11.26	문화생활의 자유 보장. 두발, 복장규제 완화
105	안양/고1	11.16~11.26	더 자유롭고 편안한 교육환경 조성. 활동과 표현의 자유 보장
106	안양/고2	11.16~11.26	아이들에게 자유의 사용법을 가르쳐주자!
107	성남/고1	11.16~11.26	학생이 주장하는 권리를 학생이 스스로 책임지는 의무가 있고, 그것을 지킨다는 걸 보여줄 필요
108	파주/고1	11.16~11.26	신체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의 주장 받아들여 조례안 제정
109	안양/초6	11.16~11.26	의사 표현의 자유. 각종 서약서 강제 작성 금지. 현재까지 인권침해 당한 학생들에게 피해보상 필요
110	화성/고1	11.16~11.26	언어폭력, 체벌 금지. 조례안 적극 홍보
111	화성/고2	11.16~11.26	유엔아동권리협약 적극 홍보
112	수원/고2	11.16~11.26	학생의견 존중. 교사와 학생 토론의 장 개설. 학생의 자율성 보장 (야자, 0교시, 보충 자율)
113	부천/고1	11.16~11.26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본으로 한 조례 제정.
114	수원/고2	11.16~11.26	교복 자율화. 여학생에게 교복치마강요 금지. 성차별 금지. 무상교육 보장. 특히 빈곤학생 지원 강화.
115	수원/고2	11.16~11.26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보장(학교교육 기회 보장).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와 홍보 강화.
116	고양/고1	11.16~11.26	야자 자율. 체벌 금지. 두발 단속 중단. 학생 의견 존중과 표현의 자유 보장. 휴대폰 압수 중단.
117	구리/고1	11.16~11.26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자유 보장. 장애학생 권리 보장.
118	부천/고2	11.16~11.26	모욕적 처벌 금지. 교사 언어폭력 중단. 자기 계발의 권리(입시 위주 교육 중단). 보충 자율. 두발/복장 규제 폐지.
119	시흥/고2	11.16~11.26	모욕적 처벌 금지(무릎 꿇고 반성문 쓰기). 강제이발 금지. 실 권리 보장.
120	고양/고1	11.16~11.26	교사의 자의적 규칙 적용 금지
121	남양주/고1	11.16~11.26	학생의 주체성 보장. 의사 표현의 자유(학교를 비판할 자유). 두발 자유. 체벌 금지. 차별 금지. 프라이버시 보장(성적 공개나 급식비 미납자 공개 등).
122	안양/고2	11.16~11.26	야자 자율.
123	의정부/고2	11.16~11.26	의사 표현의 자유(의견으로 인한 차별, 처벌 금지).
124	수원/고1	11.16~11.26	성적 차별 금지. 체벌 금지.

125	이천/고2	11.16~11.26	아동권리보장위원회 설치. 표현의 자유 보장.
126	??	11.16~11.26	학생 대상 인권교육 실시
127	수원/고2	11.16~11.26	야자 자율.
128	수원/고2	11.16~11.26	실 권리 보장.
129	화성/고1	11.16~11.26	성폭력 예방. 두발 자유
130	의정부/ 고1	11.16~11.26	의견 존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사생활 보장
131	안산/중1	11.16~11.26	체벌 금지. 집회의 자유 보장.
132	고양/초6	11.16~11.26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
133	용인	11.16~11.26	야자, 보충 자율. 종교의 자유 보장(종교 관련 교육 강요 금지)
134	수원/고3	11.16~11.26	복장 규제 완화. 야자 자율. 실 권리
135	부천/중2	11.16~11.26	실 권리. 사상의 자유 보장. 교칙 제개정예 학생 투표권 보장. 체벌 금지
136	화성/고2	11.16~11.26	학생 의견, 학생대표 존중.
137	부천/고2	11.16~11.26	학교마다 다른 교칙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 포함. 학교 밖 청소년 권리 보장 방안 강구.
138	구리남 양주/초2	11.16~11.26	CCTV 설치 제한. 성폭력 예방.
139	수원/고2	11.16~11.26	실 권리
140	수원/고2	11.16~11.26	학생들이 읽고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제정.
141	수원/고2	11.16~11.26	미션스쿨 종교 자유 보장
142	수원/고2	11.16~11.26	표현의 자유. 참여의 기회 보장
143	하남/고2	11.16~11.26	입시 위주 교육 중단. 왕따, 차별 금지.
144	고양/고2	11.16~11.26	다문화, 이주, 저소득층 아동 권리 보장. 두발, 복장 자유. 벌점제 중단. 수업 다양성 보장.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님 직업 적지 않기.
145	고양/고2	11.16~11.26	조례 제정 과정에 학생 의사 선행 조사.
146	수원/고2	11.16~11.26	성적 차별 금지(심화반 우대 등). 빈부 차별 금지(동수 득표시 부잣집 학생이 대표 선출). 인권교육 강화
147	안양/고1	11.16~11.26	인사를 해도 무시하는 선생님. 학생의 질문 경청. 성적 차별 금지. 체벌, 교사 언어폭력 금지.
148	수원/고2	11.16~11.26	여남 차별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성폭력 예방.
149	분당/고1	11.16~11.26	성폭력 예방. 아동 권리 구체화한 조례 제정
150	용인/고2	11.16~11.26	학생을 위한 학교교칙 제정.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151	수원/고2	11.16~11.26	학생의 교사소환제. 교장과의 정기적 대화의 장 마련.
152	고양/중2	11.16~11.26	아동권리협약 현실화
153	화성/고2	11.16~11.26	언어, 신체 폭력 금지. 학생 의견 존중하는 조례 제정.
154	시흥/고2	11.16~11.26	두발 자유
155	수원/고1	11.16~11.26	구체적 갈등해결 지침 제시할 만한 조례 제정. 체벌 기준 명확히.
156	용인/고1	11.16~11.26	학생은 물론 전체 사회에 아동권리협약 홍보.
157	하남/고2	11.16~11.26	교권과 조화를 이루는 학생 인권 구체화.

158	부천/고2	11.16~11.26	CCTV 철거. 일기 검사 폐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열람 금지. 자의적 소지품 검사 폐지. 가정환경조사시 불필요한 질문 금지. 학생 선택권 보장. 이성교제 금지 조항 삭제.
159	수원/고2	11.16~11.26	종교의 자유 보장.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조례 제정
160	수원/고1	11.16~11.26	아동권리협약 홍보와 교육. 교사-학생 인권 모두 존중.
161	시흥/고2	11.16~11.26	모욕적 처벌 금지. 강제이발 금지. 실 권리 보장.
162	화성/고1	11.16~11.26	학생 대상 범죄 강력 처벌. 학생 의견 반영. 학교와의 협상권. 개성 존중. 학생 인권 존중 여부 지속 모니터. 권리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두발, 복장 자유. 이성교제 금지 반대
163	고양/중2	11.16~11.26	조례 제정 과정에 학생 의견 존중. 체벌 금지. 학생회 활동 보장과 교칙에 학생 의견 반영.
164	하남/고2	11.16~11.26	학교별 교육 격차 감소.
165	의정부/고2	11.16~11.26	실 권리. 문화활동 시간 보장. 두발 자유.
166	용인/고1	11.16~11.26	야자, 보충 자율. 학생 의사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 보장. 보건실 이용 시간 확대(야자 시간엔 보건실 운영 안함). 급식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시설 개선
167	의정부/고3	11.16~11.26	체벌 금지.
168	용인/고2	11.16~11.26	야자, 보충 자율. 심각한, 감정적 체벌 금지. 학교생활규정에 학생 의사 반영
169	군포/고2	11.16~11.26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조례. 학생 참여가 전제된 조례 제정.
170	수원/고2	11.16~11.26	공개적 모욕 금지. 야자, 보충 자율. 두발 자유.
171	부천/고2	11.16~11.26	학교 현실에 맞는 조례 제정
172	고양/초5	11.16~11.26	과도한 사교육 규제. 학생 건강 보살핌. 쉬고 놀 권리 보장
173	성남/중3	11.16~11.26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체벌 금지. 0교시, 야자 자율. 두발 자유(개성 발현권). 인권을 알 권리
174	용인/고1	11.16~11.26	체벌 금지. 강제 이발과 과도한 두발단속 금지. 복장규정 완화. 교육환경 개선(위생, 운수 등). 학생회 권한 보장.
175	수원/고2	11.16~11.26	장애학생 권리 보장. 여가생활 보장.
176	하남/고2	11.16~11.26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지침서, 기관 등에 접근할 권리.
177	성남/고1	11.16~11.26	의사 존중. 야자, 보충 자율.
178	안양/고2	11.16~11.26	야자, 보충 자율. 단체기합 금지. 종교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자유를 가르치자.
179	안양/고2	11.16~11.26	유익한 정보 제공.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보호
180	고양/고2	11.16~11.26	차별 금지(다문화가정 자녀 등). 학생회 활동 보장. 두발, 복장 검사 중단. 학생 표현에 대한 불이익 금지(벌점 등). 다양한 교육 제공. 불필요한 정보 수집 금지.
181	부천/고2	11.16~11.26	학생을 인간으로 존중.
182	안양/초6	11.16~11.26	잔혹하거나 모욕적인 처벌 금지
183	부천/고1	11.16~11.26	생명권 보장(자살 예방 등).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184	성남/고2	11.16~11.26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185	화성/고1	11.16~11.26	학교생활규정에 학생 참여. 불공평한 상벌점제 시정. 휴대폰 규정 개정. 두발규정 자의적 집행 금지.
186	성남/고1	11.16~11.26	학생자치활동 보장과 학교 운영 참여. 두발, 복장 자유. 체벌 금지. 차별 금지. 프라이버시 보장(성적 공개, 일기 낭독 금지 등)
187	수원/고2	11.16~11.26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조례위원회 설치를 통해 적극 홍보와 실천 독려. 학생의 의무 조항도 포함.
188	하남/고2	11.16~11.26	진로 정보 제공(장학금 정보 포함). 문화 존중(다문화 가정 특히). 인권교육
189	고양/고1	11.16~11.26	설문조사와 캠페인 등 보장. 학생회 활동 자율성 보장과 재정 지원.
190	안양/고2	11.16~11.26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두발 자유 등 보장. 생존과 존엄 보장.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191	수원/고1	11.16~11.26	학생 의사 표현 존중. 체벌 금지. 두발 자유.

<참고자료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 해설

1. 주요 내용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제한

조례안 제10조, 제11조는 야간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러한 정규교과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지침이나 규칙을 통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제11조 제3항)를 마련하였다.

야간자율학습 등 과잉학습이나 강제학습 문제는 사전협의회 및 연구용역 과정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가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시급한 5대 과제 중 하나로 꼽은 것이며,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으로 인해 자유롭게 개성을 발현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에 조례안으로 규정한 것이다.

○ 체벌금지

조례안 제7조 제2항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조례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체벌의 폐단을 존속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여 체벌을 금지한 것이다.

체벌은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유발시키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체벌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도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학교들에서 학칙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체벌보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일깨우고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식을 체화시키는 대안적 훈육방법, 상담교사의 확충 등 교육여건의 개선, 효과적인 학급경영기법 등을 통해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조례안은 체벌을 금지하여 교육현장의 선진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집단괴롭힘 금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 학교관리자 등 교육주체 모두가 한결같이 5대 학생인권과제로 선정한 것이 왕따 등 집단 괴롭힘 금지이다. 조례안은 제7조에서 물리적 언어적 폭력 및 집단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와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와 교육감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조례안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규정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두발 길이에 대해서는 규제를 금지하고 그에 관해 학생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되, 그외 피머와 염색 등 용모 관련 사항들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용모 규제로 인해 타율적인 학교환경 및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고 두발 및 복장을 통한 개성 표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에 관한 요구가 존중되어야 하며, 두발 길이 규제의 경우 이를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사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학생들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규정하고 교육 목적상 그 제한이 부득이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구하여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 휴대폰 관련문제

근래 학교에서의 휴대폰 소지·사용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고 휴대폰 소지·사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이와 관련 조례안은 제13조에서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휴대폰을 통신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과도한 휴대폰 규제를 금지하되, 교육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의 휴대폰 사용 등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부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표현의 자유

조례안은 제17조에서 학생이 가지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다만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교의 자유

조례안 제18조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구체적으로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조례안은 제21조에서 학생에게 인간다운 교육복지를 누릴 권리를 인정하며 또한 그것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여 학교와 교육감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배려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 등 자원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는 모든 학생의 권리임은 물론 특히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사회·경제·문화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절실한 권리이므로 그러한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아울러 학교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조례안은 제18조, 제19조에서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기구 및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율적 학생회 및 학생활동 보장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 학교관리자 등 교육주체 모두가 공통적으로 5대 학생인권과제로 선정한 것이기도 하다.

○ 징계절차에서 학생이 가지는 권리

조례안 제26조에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사유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이 보장되는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였고, 특히 징계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 인권교육

조례안은 제30조~제32조에서 학생인권의 진흥을 위해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교원에 대한 인권연수,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또는 간담회를 일정 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학교로 하여금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관련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보호자에 대한 인권 관련 교육 또는 간담회에 관한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인권교육의 활성화는 당장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학생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조례내용 실현의 실효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인권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조례안은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제35조), 학생참여위원회(제36조) 제도를 마련하였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제도개선 등 학생인권에 관한 안건에 관해 심의 권한을 가지는 전문위원회이며,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제도적으로 학생 스스로의 의견을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제4장 제1절(제39조~제44조)은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학생인권옹호관"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세계각국에서 아동 권리구제기구로서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옴부즈퍼슨(Ombuzperson)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여금 경기도 전체를 지역별로 관할하게 함으로써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할지역별로 5인 이내의 학생인권옹호관(3년 임기)을 두고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인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각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조례안은 제44조에서 도내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내용을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상담시스템을 추가한 것이다.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

조례안 제45조는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는 조례안 제27조의 상담 및 조사 청구권과 함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시정권고

조례안 제45조는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성격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와 불이행시 그 사유를 소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학생인권침해 상황을 야기한 관련자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보다는 학생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진상을 조사하고 학생에 대한 상담, 조력 등 학생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하고 필요하므로 조례안은 시정권고를 넘어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수단이나 제재방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 각 학교의 규정개정 의무

조례안 제47조, 부칙 제2조는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각 학교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학교의 교칙 등 규정을 학생인권조례에 부합되게 개정하도록 하였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교장, 교원, 학부모는 물론 학생대표와 인권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도록 하였다.

조례는 경기도의 법규범으로서 하위 규범인 각급 학교의 교칙 등 규정은 조례에 부합하게 개정되어야 하므로 각 학교 규정의 적정한 개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2. 조례의 위상과 성격

(1) 조례와 관련 법령 또는 판례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법규범은 상하의 위계관계가 성립한다. 조례는 헌법과 법령 및 대한민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규범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장 수준 또는 정도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관계에 놓인다. 흔히 조례에 대하여 법률을 최저기준으로 이해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인권 관련 조례는 상위법규범에 대하여 동등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하위법규범은 상위법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될 것이다. 또한 조례로써 상위법규범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구체화하지 않는 이상 동어반복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상실한다.

따라서 조례로써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하다. 그래야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기본권보장원칙으로서 확인하고 있는, 기본권최대보장의 원칙과 기본권최소제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교육적 목적의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만약 조례로써 그보다 넓은 범위에서 교육적 목적의 차별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차별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교육적 목적의 차별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은 학생에게 차별을 가한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매우 한정적으로 정당화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즉 헌법재판소가 원용한 대법원판례의 기준은 교사의 교권의 한계에 대한 문제이지 학생의 인권의 제한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교사의 문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는 인권옹호관에 의한 진상조사와 시정권고에 한정될 것이며, 징계 또는 형사 문제는 기존의 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2) 왜 아동 또는 청소년 인권조례가 아니고 학생인권조례인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발의하는 조례안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을 그 관장사무로 한다. 따라서 교육감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점에서 학생인권에 한정된 것이다.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아동 또는 청소년 인권에 관해서는 도지사 또는 도의원의 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례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먼저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구체화됨으로써 학생과 교사 및 학교관리자 그리고 학부모의 학생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와 교육감에게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 책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4) 경기도조례인데, 경기도 학생인권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인권은 보편성을 띠므로 이 질문의 정확한 의미는 경기도 학생인권의 특수성을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경기도 교육감 및 학교가 헌법과 법률 및 각종 국제인권규범을 최저 기준으로 삼아 어떻게 그것을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된다.

일단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를 발의한 점에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주체들의 인권의식의 발전,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문화의 정착, 학교 및 도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한 재·행정적 뒷받침, 학부모와 일반행정기관 그리고 도의회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 등이 뒤따라야 한다.

조례의 제정은 그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인 것이지 그것을 마무리하는 일이 될 수 없다.

(5)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는 어떠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나? 또한 조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주어지나?

인권은 강제력을 그 주된 기반으로 삼지는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 등의 권한을 가질 뿐 법적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조례의 성격상 장래에는 일정한 제재조치를 담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그것을 인권교육의 매개로 삼아 경기도 교육공동체가 인권의식의 성장, 인권존중 관행의 정착, 인권보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에 힘써야 할 때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일단 그 진상을 조사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주력하였다. 물론 학생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징계권한을 비롯한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